건설/부동산

건설업 노동안전 종합대책 영향 분석

건설/리츠 박세라 T.02)2004-9507 / park.se-ra@shinyoung.com

분석의 기본 가정

- 공공 주도의 공급 원칙으로써 공공성 강화
-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 자정 효과 기대

사실상 건설 현장을 집중 겨냥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
관리 감독 및 처벌 수위 강화에 따른 직간접 비용 증가 예상

지나 15일 고용노동부에서 '노동안전 종합대책'을 발표하였다. 사고의 근본적·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를 제시한 가운데, 상당 부분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중 건설업 경영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그 여파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.

도급 계약 시 '원청(건설사)'의 안정 예방 의무 강화

1.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

중소건설사의 적격심사(국가 공사 100억원 미만) 낙찰하한율 상향(+2%p)

- ✓ 낙찰하한율이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 받기 위해 써낼 수 있는 최소 입찰 금액의 비율을 의미, 100억원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0%일 경우 최소 80억원부터 입찰 가격 제안 가능, 해당 비율을 2%p 올려주겠다는 의미는 안전관리비 보장 비용으로 원가율 2%p을 공공 발주 입장에서 확보해주겠다는 것
- ✓ 발주처가 원청사와 안전관리비 비용에 대해 공동 부담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으나, 현실적인 낙찰하한율이 애초에 '너무 낮게 설정'되어있는 것이 현 상황임. 따라서 애초에 공사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, 2%p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임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처에서 원청까지 확대

- ✓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가 '발주자'로만 한정되었음. 발주처가 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이를 원청에게 지급하는 것. 원청은 해당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배급되는 지 파악되지 않았음. 이에 원청사에게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정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지급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
- ✓ 원청사의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법적 의무가 되면서 현장 원가 정산 시 일부 비용 반영이 있을 것으로 추정, 준공 시 발생했던 이익 규모가 축소될 여지 존재

2.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

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 확보 유도

- ✓ 현재 공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사 기간은 발주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. 그러나 해당 내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지침을 명확하게 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. 또한 발주처가 적정 공기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및 인허가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바, 객관적인 공기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. 이는 건설 현장 전반에서 '공기'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과도한 공기 단축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임. 다만, 그렇다면 타사와 차별화되는 건설업의 진짜 경쟁력에 대해서 업계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

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

신속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,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·인허가 취소

-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
- 영업정지 대상 확대, 현 '동시 2명 이상 사망'에서 '연간 다수 사망' 추가, 사망자 수에 따란 영업정지 기간 강화
-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'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',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토록 명확화
-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
  - ✓ **건설 경영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.** 영업이익의 5% 이내 과징금 신설로 인해 매출원가율이 약 0.3%p 증가하는 효과와 같음. 또한 영업정지 요건이 강화되고 무엇보다 '건설업 등록 말소'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영업정지 요청 및 노동부 요청으로 가능해지면서 '건설업의 계속 사업 영위'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음. 이는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, 건설 현장에 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하면서 '수주', '매출-공기', '이익-비용 증가', '재무 건전성-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안, 자금조달 시장 내 부정적 평가' 등 다방면에서의 영향을 미칠 것
  - ✓ **이는 건설사들에게 '안전 비용'을 '의무 비용'으로 전환, 안전 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킨 것**

여신심사,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

여신심사, 보증,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

- 대출금리·한도·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, 대출 약정 등 개선,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적용, 선분양제한 기간 및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 검토,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정책자금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) 참여제한
  - ✓ 중소건설사의 의존도가 높은 HUG대출에 대해 중대재해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효과

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

-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관련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(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)
-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,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
  - ✓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 추가로 인해 상장기업 기관 수급에 있어 직접적 영향

건설업 경영, 새로운 판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
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시기

건설업은 수주 가뭄에 인건비 상승 등 이중고에 이어 안전관리 의무 강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.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대형사를 포함 건설업 전반의 외형 감소는 불가피하다. 건설업의 진짜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.

Compliance Notice

■ **투자등급**

종목
- **매수**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%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
- **중립**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±10%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
- **매도**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-10%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

산업
- **비중확대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
- **중 립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
- **비중축소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

-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,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.
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